

“2024년 상반기 분당구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3구역)”
과 업 지 시 서

성 남 시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 목 차 -

1. 일반사항

- 1.1 과업의 목적
- 1.2 과업의 개요
- 1.3 적용기준
- 1.4 과업수행기간
- 1.5 과업수행 시설물 목록
- 1.6 과업 일반사항
- 1.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1.8 수급인의 책임
- 1.9 중간성과품 제출
- 1.10 보안 및 비밀유지
- 1.11 용역수행자의 교체
- 1.12 용어의 해석
- 1.13 발주처의 제공자료
- 1.14 해약조건
- 1.15 준수사항 및 고려되어야 할 사항
- 1.16 안전관리계획

2. 과업수행

- 2.1 자료수집과 분석·평가
- 2.2 현장조사
- 2.3 시설물의 상태평가
- 2.4 시설물의 안전도 및 내하력 평가
- 2.5 보수·보강방안 제시
- 2.6 내진성능평가 과업 특별사항

3. 성과품 제출

- 3.1 보고서 작성
- 3.2 성과품 제출
- 3.3 제출 목록

4. 예정 공정표

제 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내제되어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가. 용역명 : 2024년 상반기 분당구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3구역)

나. 대상지 : 분당구 관내 3구역 교량 및 육교

다. 과업수행 대상 목록

연번	시설물명	분류	준공 년도	연장(m)	차선수	형식		비고
	40개소							
1	국릉교	3종	2009	48	3	PREFLEX 합성형교	콘크리트	
2	국은교	2종	2008	135	6	스틸박스거더	강교	
3	국은램프1교	3종	2008	25	1	PF	콘크리트	
4	국은램프2교	3종	2008	25	1	PF	콘크리트	
5	까치교	3종	2008	45	3	RC라멘	콘크리트	
6	까치육교	3종	2008	38	보도	Steel BoxGirder	강교	
7	낙원교	3종	2009	51	8	R.C RAHMEN	콘크리트	
8	너더리육교	3종	2009	50	보도	S.T Box Girder	강교	
9	너분바위교	3종	2009	46	보도	C.F.T Girder	강교	
10	널다리교	3종	2009	49	3	P.C.T Girder	콘크리트	
11	느티나무교	3종	2008	46	보도	강아치교	특수	
12	대장IC램프1교	3종	2009	30	2	PF	콘크리트	
13	대장IC램프2교	3종	2009	40	2	RA	콘크리트	
14	대장천교	3종	2009	40	2	RA	콘크리트	
15	두밀교(상행)	3종	2008	31	2	강관 Girder	강교	
16	두밀교(하행)	3종	2008	50	1	강관 Girder	강교	
17	두밀육교	기타	2022	20	보도	강관거더	강교	
18	외루니육교	3종	2008	44	보도	Steel BoxGirder	강교	
19	무지개교	3종	2008	27	보도	RC라멘	콘크리트	
20	삼죽오교	3종	2009	50	보도	강사장교	특수	
21	상산운교	3종	2008	47	5	Steel BoxGirder	강교	
22	서판교육교	3종	2008	44	보도	Steel BoxGirder	강교	

23	석운1교	3종	2009	35	2	PSCE	콘크리트	
24	석운2교	기타	2009	14	2	RA	콘크리트	
25	석운교	기타	2008	15	10	콘크리트BOX	콘크리트	
26	성내미육교	3종	2009	46	보도	S.T Box Girder	강교	
27	연구원교	3종	2008	29	2	프리플렉스빔	콘크리트	
28	운중교	3종	2008	32	3	프리플렉스빔	콘크리트	
29	운중육교(판교동)	3종	2009	46	보도	S.T Box Girder	강교	
30	은하교	3종	2009	50	보도	현수교	특수	
31	은하육교	3종	2009	43	보도	S.T Box Girder	강교	
32	자전거2교	3종	2009	24	보도	사장교	특수	
33	장미교	3종	2008	45	보도	사장교	특수	
34	청계교	기타	2008	15	6	지중 RC 라멘교	콘크리트	
35	토공12교	기타	2008	15	3	RC 라멘교	콘크리트	
36	하나육교	3종	2008	44	보도	Steel BoxGirder	강교	
37	하산운교	3종	2008	41	4	강관 Girder	강교	
38	학고개육교	3종	2008	48	보도	Steel BoxGirder	강교	
39	한절교	3종	2009	47	7	S.T Box Girder	강교	
40	해오름교	3종	2008	36	보도	사장교	특수	

라.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 분		부재명	비 고
주요 부재	상부구조	바닥판, 거더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받침	교량받침	
	케이블	케이블, 정착구, 행어밴드, 새들	
	기타부재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보조 부재	2차부재	가로보 및 세로보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추락방지시설, 도로포장, 도로부 신축이음부, 환기구 등의 덮개	

3. 적용기준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 다.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4. 6. 30.까지

- 가.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2) 발주자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 (3) 관계 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인정할 경우

5. 과업의 범위

- 가. 현황 조사 및 자료 분석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한 안전점검
- 다. 중대한 결함 발견 시 즉시 보고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6. 과업 일반사항

- 가.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계와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착수계
- (2) 과업수행계획서
- (3)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4)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 (5) 사업수행 조직표
- (6) 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안 각서
- (7) 안전관리계획서

다.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중간보고는 준공예정 2주일 전에 책임기술자가 보고하여야 하며, 위 사항에서 보완사항으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구조물 현장조사시 부득이한 교통통제가 필요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 구조물 전, 후에 안전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 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가.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시행 중 발주처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는 수급인과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 대하여 내·외국의 전문 기술자(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수급인이 별도협의 후 시행한다.

8.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은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의 내용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문서가 용역성과에 첨부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수급인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 다. 수급인이 제출한 과업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비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공사 등 진행상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해당부분의 과업을 수급인 부담으로 재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따라 발주처가 결정하는 책임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은 용역의 재시행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9. 중간성과품 제출

발주청으로부터 중간성과품 제출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 가.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라.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 사진은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 마. 기타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수급인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처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2. 용어의 해석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발주처에서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시행하여야 하고, 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3. 발주처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처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수급인이 보유중인 자료를 활용 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 성과품은 전산화하여야 한다.

14. 계약조건

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1)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발주처의 정당한 방침에 불응한 경우
-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15. 준수사항 및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나.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 · 조정한다.

16. 안전관리계획

가. 일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등 종사자의 안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기관은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2)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의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3) 보호구

안전점검 등 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높이 2m 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 현저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4) 안전사고의 처리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안전수칙

-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협조를 얻어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를 한다.
-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 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 각종 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 장비 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점검차량을 사용할 때는 굴절붐(Boom) 및 암(Arm) 회전 시 주의하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용을 시행한다.

제 2장 과업수행

1. 자료수집과 분석·평가

본 과업의 수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한 안전점검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가.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자료를 수집, 분석
- 나. 교량의 이력사항과 변형상태 조사 분석, 평가
- 다. 기존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및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안전상태 변화를 분석하고 기존자료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시행
- 라.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 수집, 분석
- 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교량관리 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2. 현장조사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1) 대상 구조물 관련자료(설계도면, 시방서, GIS)
- (2) 과년도 점검 및 진단 자료
- (3) 보수·보강 이력사항
- (4) 기타 대상구조물 관련 자료

나. 정밀외관조사

- (1) 누수, 균열, 박리, 박락, 배부름, 백태 등
- (2) 제원 측정 및 외관 조사
 - 시설물의 외관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상 정기점검 수준의 외관상태 평가 요령에 의한다.
 - 각 부재별 상태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 점검 자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항, 부대시설물, 환경조건(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조건), 기타(최고 수위)
 - 외관조사 망도 작성(CAD 파일 신규 작성)
 - 외관조사 사진첩 작성(1:1 사진 촬영 - 손상위치, 크기, 개소, 부재명 등)

3. 시설물의 상태평가

가.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진단계획에 따라 현장 육안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 주요항목 및 조사시 착안사항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한다.

다. 각종 측정장비는 공인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 년도, 측정능력)등을 최종보고서 내용에 첨부시켜 제출토록 한다.

라. 손상상태 평가는 손상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B,C,D,E의 5가지 등급으로 산정하여

점검 양식에 기입하여야 한다

마. 균열, 처짐, 박리 등 손상상태 평가를 위한 외관조사 결과는 손상부위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전체부재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시설물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5. 보수·보강방안 제시

가.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을 감안한 적절한 대책(안) 제시 및 보수보강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상 시설물에 대한 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방안에 대한 기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 시방 또는 특기 사항을 명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다. 대책 방안의 검토 및 제시는 관련 자료를 수집, 공법을 비교 분석하여 적정성이 확인된 공법을 제시하되 특정업체의 제품이나 특정 공법을 임의 반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반영코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 3장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작성

- 가.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작성되어야 한다.
- 나.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다.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C.G.S를 사용한다.
- 라.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마.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 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 시켜야 한다.
- 바. 종합보고서 작성요령
- (1) 규 격 : A4(국배판), 백상지
 - (2) 글자크기 : 11포인트
 - (3) 제 본 : 좌철

2. 보고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기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기점검 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나. 정기점검의 개요	정기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점검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기타 관련자료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기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및 보수·보강방법 ◦ 보수·보강 개략공사비 ◦ 기타 필요한 사항

3. 성과품 제출

- 가. 수급인은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나. 수급인은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시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 등 준공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한 시에는 수급인의 부담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 다. 본 과업의 성과품 및 관련된 자료, 정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없이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4. 제출 목록

- 가. 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 3부
- 나. 성과품 USB : 3개
- 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성과품 제출 및 FMS 등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해당시설물)

제 4장 예정 공정표

과 업 내 용	4월		5월		6월	
◇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설계도면의 검토 - 관련기준 검토 - 대상구조물의 이력조사						
◇ 외업 - 제원확인 및 측정 - 구조물 상태조사 - 슬래브, 교대, 교각, 난간, 신축 이음장치 - 배수시설, 교좌장치, 포장상태 조사 - 교량 지장물 조사						
◇ 내업 - 보고서 작성 - 준공도서 납품						

붙임 교량 안전점검표 1부.

교량 안전점검표

○ 시 설 명 : ○○○교(분당구 ○○○동 ○○○번지)

○ 점검일시 : 2024. . .()

구분	평 가 항 목	점검결과 (점검자의 의견)	평가결과			
			양호	주의	불량	해당없음
주 요 시 설	1. 거더(RC 및 PSC)의 균열 및 손상상태					
	2. 바닥판(RC 및 PSC)의 균열 및 손상상태					
	3. 주요강재 및 접합부 손상 상태					
	4. 케이블 부재의 손상 상태					
	5. 교량받침(교좌장치) 및 주변 손상 상태					
	6. 교각(주탑 포함) 및 교대(날개벽 포함)의 균열 및 손상상태					
	7. 기초의 세굴·침하 및 손상상태					
일 반 시 설	8. 교면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등)의 균열 및 손상상태					
	9. 신축이음 본체 및 후타재의 균열 및 손상상태					
	10. 가로보 및 세로보의 균열 및 손상상태					
	11.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등) 막힘 및 손상상태					
	12. 강 부재의 도장 및 녹 발생상태					
	13. 난간(방호벽, 방호울타리), 연석의 손상상태					
부 대 시 설	14. 옹벽, 석축의 균열 및 손상상태					
	15. 안전 및 기타시설(중앙부 방호벽, 가드레일, 방음벽 등)의 손상상태					
	16. 비탈면(사면, 절개지 등)의 배수 및 손상 상태					
	17. 점검로 등 손상 상태					
	18. 교량하부 부착시설물(수도관 등) 손상상태					
종 합 의 건						
특 기 사 항						
구 분	소 속	직	성 명	확 인		
점검자						